

『공유재산 구미소방서 지역대 신축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6월 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6월 11일

제1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고아읍의 인구증가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방력 추가 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 지역대 조립식 건물은 노후하고 협소하여 구급차 등의 추가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시유재산에 이전 신축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 소유인 고아읍 예강리 706-52번지의 2필지, 부지 1,653㎡에 노후된 구미소방서 지역대 건물을 이전 신축코자 하는 것임

라. 참고사항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동의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현 구미소방서 고아 119 지역대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임

○ 검토결과

- 본 건은 고아읍의 인구증가에 따른 화재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소방력 추가보강이 시급한 형편이나 상대적으로 현 고아읍 119 지역대는 건물이 노후화 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구급차 등의 추가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
- 사유지인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706-52번지 외 2필지(부지 1,653㎡)에 건축면적 600㎡(지상2층) 규모의 지역대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서, 신청사 건립은 열악한 소방시설 환경개선과 효율적인 소방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